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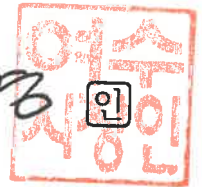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장승기

인



여수시 조례 제2195호

붙임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95호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심의 안건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제1항 후단 중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금고는”을 “시장은”으로, “현금으로 시에 출연해야 하며, 시장은”을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로, “편성하고 이를 공개해야”를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제3항 중 “초래하는”을 “가져오는”으로 한다.

중전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총 계		100	
	소 계	28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8)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금융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면 만점처리	(20) 6 6 6 2	
	소 계	2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	
	소 계	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소 계	2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7)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소 계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p> <p>③ ~ ⑤ (생략)</p> <p><신설></p>	<p>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심의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 2. <u>심의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 3. <u>심의 안건이 위원의 배우자,</u>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등)

① 시장은 금고지정 입찰공고를 하려는 경우 입찰자격,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고한 내용을 관내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 ~ 제18조 (생략)

제14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등)

① -----

-----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4조부

제19조(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지정금고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시에 출연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물품 등 비현금성 협력사업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금고운용 보고) ①·②

(생략)

③ 지정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생략)

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20조(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① 시장은 -----
-----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
-----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 . <후단 삭제>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금고운용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가져오는 -----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 제22조 (생략)

제22조 ~ 제23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